

## ◎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-72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(내용)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7월 06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###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#### 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#### 2. 행정처분대상 : 최민성

#### 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## 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5. 의견제출장소 :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(☎ 062 - 457 - 1595/ FAX 062-457-1598 / E-mail : ryn0219@korea.kr

#### 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 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최민성	1989.○.19.	광주광역시 북구 대자실로 ○○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	18,000,000	062-○○○-0368	부동산